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송바우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개정이유

- 조례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 규정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재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증인 등의 여비 지급사항은 개정된 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하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 규정은 삭제 및 정비
 - 행정사무조사의 발의 및 계획서 작성 등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1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3조)
 - 감사·조사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은 「안산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9조)

- 감사·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증인선서, 증인의 보호 사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와 중복된 내용은 삭제(현행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 출석요구에 대한 관계공무원 불출석 통보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제41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18조)
 - 감사·조사의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기밀 주의의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8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20조~제22조)
 - 감사·조사에 대한 결과 처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현행 제2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13조)
 - 증인 등의 여비 지급 기준은 개정된 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9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안은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

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임.

감사 및 조사의 실시 장소, 대상기관 및 사무,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제출서류 목록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여비 등 비용지급에 대하여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강광주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최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시민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짐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성 대두
-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을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안 제5조제2항)

-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안 제5조제3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안 제5조제4항)

○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7조제2항)

○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공개(안 제10조제3항)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1조제1항)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 신설(안 제9조)

- 의회가 개회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출장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등의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
-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금지 신설(안 제12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명을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국외 ‘여행’을 ‘출장’이라고 개정하여 공무로 실시하는 출장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와 제3조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시 공정성을 기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안 제6조, 제7조,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을 신설함.
- 안 제6조는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표를 마련하여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6개 항목 19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

를 기존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심사 의결을 강화함.

안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을 신설하여 의회가 개회중인 때,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계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0조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출국 4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11조는 귀국 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정하고, 별지 서식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을 정하고 있음.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김진숙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신고 서식 구체화(안 제5조제1항)
 -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5조제5항)
 -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 위반시 의장의 사임권고 근거 마련
-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안 제5조 제6항)
 -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안 제7조)
 -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성실한 신고 근거 마련

-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겸직금지 대상의 불명확성 해소
- 징계 등 사후통제 근거 마련(안 제17조)
 -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안 제17조 별표)
 -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 자의적·온정적 처리 방지
-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검토 및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겸직 등 금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금지하면서 지방의원 배우자 등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용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안산시의회의원 징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는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의장이 사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하도록 신설하여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 겸직신고서에는 수행업무내역, 해당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연간 보수 수령액을 기재하도록 신고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도 정확한 신고를 유도함.

또한, 겸직사실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겸직사실 없음 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 내역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함.

[별지 제1호] 안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 관련 규정은 조례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있음.

- 안 제7조는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성실한 신고 근거를 신설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겸직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겸직금지 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함.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함.

1유형)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유형) 안산시 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유형) 안산시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또한, 관리인의 범위를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으로 구체화 함.

○ 안 제17조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겸직허위신고, 겸직사항 사임권고 불이행, 영리거래금지위반, 계약체결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여 징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겸직신고위반, 영리거래 금지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의 기준을 [별표 2]를 준용한다고 함.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준용한다’는 용어보다는 ‘따른다’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